

2019. 7. 29. 판결
유럽사법재판소 대합의부
사건번호 C-469/17

#군사상황보고서
#기밀사항
#저작물성
#유럽연합 지침
#재량권

유럽사법재판소 (대합의부) 판결

2019년 7월 29일

“선결판단을 위한 요청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지침 2001/29/EG - 정보화사회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합치 - 제2조 a - 복제권 - 제3조 제1항 - 공중 전달 - 제5조 제2항 및 제3항 - 예외 및 제한 - 효력범위 -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사건번호 C-469/17

2017년 6월 1일 결정에 따라 독일 대법원에 의해 신청된 유럽연합조약(AEUV) 제 267조에 따른 선결판단 요청은 2017년 8월 4일 유럽사법재판소에 접수되었으며, 각 당사자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풍케 미디어(Funke Medien NRW GmbH)와 독일 연방(Bundesrepublik Deutschland)이다.

유럽사법재판소(대합의부)

소장 K. Lenaerts, 합의부장 A. Arabadjiev, M. Vilaras, T. von Danwitz, C. Toader, F. Biltgen und C. Lycourgos 및 판사 E. Juhász, M. Ilešič (보고관), L. Bay Larsen, S. Rodin의 협력 하에

법률고문관: M. Szpunar,

의장: M. Aleksejev, Referatsleiter,

2018년 7월 3일의 서면절차 및 구두심리에 근거하여

다음에 대한 고려 하에

- 변호사 T. von Plehwe이 변론하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풍케 미디어
- T. Henze, M. Hellmann, E. Lankenau 및 J. Techert이 대리인으로 대표하는 독일 정부

- E. Armoët, D. Colas 및 D. Segoin이 대리인으로 대표하는 프랑스 정부
- Z. Lavery 및 D. Robertson가 N. Saunders, Barrister의 도움을 받아 대리인으로 대표하는 영국 정부
- H. Krämer, T. Scharf 및 J. Samnadda가 대리인으로 대표하는 유럽연합 위원회

2018년 10월 25일 폐회발의에서 법률고문관의 최종의견 청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1. 선결적 판단은 정보화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합치를 위한 2001년 5월 2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지침 2001/29/EG(“정보화사회저작권지침”(ABl. 2001, L 167, S. 10) 제2조 a, 제3조 제1항 및 제5조 제2항과 제3항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
2. 이는 풍케 미디어에 의해 독일 정부가 “기밀사항”으로 분류한 문서가 공개된 것으로 인한 독일 일간지 베스트도이치 알게마인 차이퉁(Westdeutsche Allgemeine Zeitung)의 인터넷 포털을 운영하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풍케 미디어(이하: 풍케 미디어)와 독일 정부 사이의 법적 분쟁에서 기인한다.

법적 범위

유럽연합법률

3. 판단 근거인 정보화사회저작권지침 제1, 3, 6, 7, 9, 31 및 32는 다음과 같다:

“(1) 유럽연합 조약은 국내시장의 창출 및 국내시장을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율을 도입하는 것을 규정한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회원국의 법조항의 합치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

(3) 제안된 합치는 국내시장의 4가지 자유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며 법의 기본원칙, 특히 지적재산권,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공익에 대한 원칙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된다.

...

(6) 사회적 차원의 합치 없이 일부 회원국에서 이미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개별 국가적인 차원의 입법 이니셔티브는, 국내시장의 분열 및 법적 불일치로 이어지게 되는, 법적 보호에서의 현저한 차이 및 이를 통해 저작권상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및 상품의 자유로운 거래의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법적 차이 및 불확실성은, 그 결과로 지적 재산의 국경을 초월한 효용이 이미 크게 증대되어 있는, 정보화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7) 따라서 국내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위한 기존 사회적 법의 테두리가 조정되고 보충되어야 한다. ... 국내시장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차이는 제거되거나 저지될 [필요가] 없다 ...

...

(9)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합치는, 이러한 권리가 정신적 창작물에 대해 본질적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보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호는 저작자, 공연 예술가, 제조자, 소비자, 문화와 경제 및 광범위한 대중의 이익을 위해 창작 활동의 유지와 발전을 보장하는 데에 기여한다.

...

(31) 다양한 권리인의 범주 사이에 그리고 다양한 권리인과 보호대상물 이용자의 범주 사이에서의 적절한 권리 및 이익의 균형이 보장되어야 한다. 회원국에 의해 결정된 보호권과 관련된 예외 및 제한은 새로운 전자 미디어의 배경하에 새롭게 평가되어야 한다. ... 국내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제외 및 제한은 통일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합치의 정도는 국내시장 기능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32) 복제권 및 공중전달권에 관한 예외 및 제한은 동 지침에 빠짐없이 나열

되어 있다. ... 회원국은 이러한 예외 및 제한을 일관된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4. 지침 제2조(“복제권”)는 다음과 같다:

“회원국은 다음의 사람에게, 모든 유형과 방식의 그리고 모든 형식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임시적 또는 영구적인 복제를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규정한다:

a) 자신의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자
...”

5. 동 지침 제3조(저작물의 공중전달권 및 그 밖의 보호대상물의 공중제공이용)는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회원국은 저작자에게, 자신이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일반공중에 공개되는 방식으로, 저작물의 공중제공이용을 포함하여 자신의 저작물의 유선 또는 무선으로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가 속한다고 규정한다.”

6. 지침 제5조(“예외 및 제한”)는 제3항 c 및 d 그리고 제5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3) 회원국은 다음의 경우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권리와 관련하여 예외와 제한을 규정한다:

...

c) 이러한 이용이 명시적으로 유보되어 있지 않은 한도에서 그리고 저작자의 이름을 포함한 출처가 제공되는 한도에서 경제적, 정치적 또는 종교적 성격의 현안 또는 방송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이러한 유형의 보호대상물에 대한 공개된 기사의 언론에 의한 복제, 공중전달 또는 공중제공이용 또는 이것이 정보제공 목적으로 정당화되는 한도에서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의 이름을 포함한 출처가 제공되는 한도에서 시사사건 보도와 관련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대상물의 이용;

d) 공공이 이미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대상물에 해당하는 한도에서, -이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의 이름을 포함한 출처가 주어진 한도에서 그리고 사용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며 특별한 목적에 의해 그 범위가 정당화되는 한도에서의 비평 또는 리뷰와 같은 목적을 위한 인용;

...

(5) 제 1, 2, 3 및 4항에서 언급된 예외 및 제한은 특정된 특별한 경우, 즉 저작물의 정상적인 효용 또는 그 밖의 보호대상물을 침해하지 않고 권리인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독일 법률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 - 1965년 9월 9일의 저작권법(연방법공보 BGBl. I, 1273면)은 제50조(“시사사건 보도”)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송출된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적 수단, 신문, 잡지 및 그 밖의 다른 인쇄물이나 시사적 관심을 본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타 데이터 매체 내지는 영화를 통한 시사사건 보도를 위하여, 그 목적에 의해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저작물의 복제, 배포 및 공중전달이 허용된다.

8. 제51조(“인용”)는 다음과 같다:

“공개된 저작물의 복제, 배포 및 공중전달은 인용의 목적으로, 이용이 특정한 목적에 의해 그 범위가 정당화되는 한도에서 허용된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용된다.

1. 개별 저작물이 공개 이후에 내용의 설명을 위해서 독립적인 학문적 저작물에 수용되는 경우
2. 저작물의 일부가 공개 이후에 독립적인 언문저작물로 제시되는 경우
3. 출판된 음악저작물의 일부가 독립적인 음악저작물로 제시되는 경우”

원소송 및 선결문제

9. 독일 연방 공화국은 매주 연방군(독일)의 해외배치와 배치지역에서의 상황에 관한 군사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의회 보고”라는 이름으로 독일 연방 하원의원, (독일) 연방 국방부를 비롯한 기타 연방 부처의 부서 및 특정 연방 국방부 하위부서에 발송된다. 의회 보고는 기밀사항으로 “기밀사항-기관제출용”으로 분류되며, 이는 독일법상 네 가지 수준의 기밀성 중 가장 낮다. 또한 독일 연방 공화국은 제한 없이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중 보고”로 의회 보고의 요약본을 공개한다.
10. 풍케 미디어는 독일 일간지 베스트도이치 알게마인 차이퉁의 인터넷포털을 운영한다. 2012년 9월 27일 풍케 미디어는 2001년 9월 1일부터 2012년 9월 26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전체 의회 보고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다. 관할 당국은 의회 보고의 정보공개가 연방군의 보안에 민감한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신청을 거부했다. 관할 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연방군의 보안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의회 보고 버전을 의미하는, 공중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참조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풍케 미디어는 알려지지 않은 경로를 통해 의회 보고의 상당부분에 접근했으며, 그 중 일부를 “아프가니스탄 페이지”라는 제목으로 소개 텍스트, 추가링크 및 쌍방향 참여를 위한 초대가 포함된 스캔 페이지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11. 독일 연방 공화국은, 풍케 미디어가 이를 통해 의회보고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금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독일) 쾰른 지방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풍케 미디어의 항소는 (독일) 쾰른 상급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선결문제를 제출한 법원에 상고함으로써 풍케 미디어는 금지소송의 기각을 위한 자신의 청구를 계속하여 추구했다.
12. 제출법원은 쾰른 상급법원의 추론은 의회 보고가 “어문저작물”로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공적 저작물이 아니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동 법원은 어떤 구체적인 특성을 통해 의회 보고의 창작적 특색이 결정되는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13. 그러나 제출법원에 따르면, 상고법원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의회 보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어쨌든 시사사건 보도에 대한 저작권 제한 규정(저작권법 제50조) 또는 인용권(저작권법 제51조)에 의해 커버되거나 1949년 5월 23일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문 내지 제2문 및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11조에 따른 정보자유 및 언론자유 기본권의 고려 하에 정당화되는 경우, 관련 판결을 보충할 기회를 주기 위해 쾰른 상급법원의 판결을 폐지하고 해당 사안을 다시 회부하는 것은 배제된다. 이러한 경우 사안은 최종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하다. 그러면 제출법원은 쾰른 지방법원의 판결을 수정하고 독일 연방 공화국에 의해 제기된 금지소송을 기각해야 한다.
14. 제출법원은 이 한도에서 기본권, 특히 정보자유 및 언론자유와 관련하여 정보화사회 저작권지침 제2조 a, 제3조 제1항, 제5조 제3항 c 및 d의 해석이 분명하지 않다는 견해를 취한다. 특히 이러한 조항이 국내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의문이다.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유럽연합 지침을 이행하는 국내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동 지침이 회원국에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위임하지 않는 한, 기본법상 기본권 기준이 아니라, 연합법을 통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15.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연방 사법재판소는 중지하고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다음의 질문을 선결판단으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1. 자신의 저작물의 복제(지침 제2조 a) 및 공중이용제공을 포함한 공중전달(지침 제3조 제1항)에 관한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와 이에 대한 예외와 제한(지침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들을 국내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이 인정되는가?
 2. 자신의 저작물의 복제(지침 제2조 a) 및 공중이용제공을 포함한 공중전달(지침 제3조 제1항)에 관한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의 지침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된 예외와 제한의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본권 헌장을 고려해야 하는가?
 3. 정보자유권(헌장 제11조 제1항 2문) 또는 언론자유권(헌장 제11조 제2항)은 동

지침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예외 또는 제한 이외에 자신의 저작물의 복제(지침 제2조 a) 및 공중이용제공을 포함한 공중전달(지침 제3조 제1항)에 관한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의 예외 및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선결문제에 대하여

서두

16. 제출법원은 쾰른 상급법원이 풍케 미디어의 항소 기각을 위해 의회보고가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특성을 통해 의회보고의 창작적 특색이 결정되는지는 정확하게 확정하지 않았다.
17. 이에 대해 다음의 설명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18. 지침 제2조 a 및 제3조 제1항은 회원국이 저작자에게 “저작물”과 관련하여 어떤 형태 또는 방식으로든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 내지는 공중전달을 허용 또는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대상물은 이러한 규정의 의미에서 “저작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침에 따른 저작권을 통해 보호될 수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2018년 11월 13일 판결, *Levola Hengelo*, C-310/17, EU:C:2018:899, 34 단락 참조).
19. 확립된 판례를 통해 도출되는 바와 같이, 대상물이 “저작물”로서 분류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누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관련 대상물이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물이라는 의미에서 원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적 창작물이 저작자 자신의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저작자가 자유롭게 창의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스스로의 창작력을 표현할 수 있었던 자신의 개성이 표현되어야 한다(이러한 의미에서 2011년 12월 1일 판결, *Painer*, C-145/10, EU:C:2011:798, 87 내지 89 단락 참조).

20. 다른 하나는 지침의 의미에서의 “저작물”로의 분류가 그러한 지적 창작물을 표현하는 요소를 유보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의미에서 2018년 11월 13일 판결, *Levola Hengelo*, C-310/17, EU:C:2018:899, 37 단락 및 거기서 인용된 판례).
21. 제출된 사안에서 풍케 미디어는 의회보고가 그 구조에 있어 서로 다른 저작자에 의해 통일적 양식을 기반으로 작성되고 오로지 사안과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독일 정부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한 통일적 양식의 제작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2. 군사상황보고서가 원 소송에서와 같이 쟁점이 되는 것인지 또는 특정 요소가 지침 제2조 a 및 제3조 제1항의 의미에서의 “저작물”로 분류되는지, 따라서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국내법원이 결정할 사안이다(이러한 의미에서 2009년 7월 16일 판결, *Infopaq International*, C-5/08, EU:C:2009:465, 48 단락 참조).
23. 이것이 사실상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국내법원은 저작자가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쟁점이 되는 대상물의 독창성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데에 적합한 자유로운 창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그러한 독창성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적 정신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지적 창조물을 나타내는 결과에 도달하는 단어의 선택, 배열 및 조합에서 비롯된다(이러한 의미에서 2009년 7월 16일 판결, *Infopaq International*, C-5/08, EU:C:2009:465, 45 내지 47 단락 참조). 동 보고서 작성에 대해 사용된 독점적인 지적 노력 및 전문 지식은 이 경우 중요하지 않다(2012년 3월 1일 판결, *Football Dataco u. a.*, C-604/10, EU:C:2012:115, 33 단락 참조).
24. 원 소송에서와 같이 군사상황보고서가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그것에 포함된 정보를 통해서 결정되고, 이러한 정보와 보고서의 표현이 일치하고 따라서 보고서가 독창성을 배제한 전적으로 기술상의 기능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순수하게 정보제공을 위한 문서로 다뤄지려면, 이것이 저작자에게 그러한 보고서의 작성의 경우에 가능하지 않았다는 그의 의견 19호에서 도출되는 법률고문관의 진술에 따라 그의 창작적 정신은 독창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었어야 하며 자신의 지적 창조를 표현하는 결과를 달성했어야 한다(이러한 의미에서 2010년 12월 22일 판결, *Bezpečnostní*

softwarová asociace, C-393/09, EU:C:2010:816, 48 내지 50단락, 2012년 5월 2일 판결, SAS Institute, C-406/10, EU:C:2012:259, 67 단락 및 거기서 인용된 판례). 이러한 경우 국내 법원은, 이러한 보고서가 지침 제2조 a 및 제3조 제1항의 의미에서의 “저작물”이 아니며 따라서 동 규정을 통해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을 확정해야 한다.

25. 따라서 원 소송에서 쟁점이 된 것과 같은 군사상황보고서는 오로지 -국내 법원에 의해 개별 사안에서 심사되어야 하는- 자신의 개성이 표현되고 작성에 있어서 자유롭게 내린 창의적인 결정이 표현되는 저작자의 지적 창작이라는 요건 하에서만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출되어야 한다.
26. 제출된 질문은 이러한 고려를 유보하여 답변되어야 한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27. 우선 배경이 되는 제출된 판결 제13 및 14 단락에서 도출되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제출법원이 원 소송 분쟁의 해결을 위해, 지침 제5조 제3항 c 및 d가 이행된 시사사건 보도 및 인용에 관한 저작권법 제50조 및 제51조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28. 제출법원이 사법재판소에 특별히 동 지침 조항의 해석에 대해 요청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쾰른 상급법원의 관점에서 의회보고가 공개 미디어를 통해 그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것이 저작권법 제50조 및 제51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 제2조 a 및 제3조 제1항과 같은 연합법상 조항이 회원국에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연방 헌법 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유럽연합 지침을 이행하는 국내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동 지침이 회원국에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위임하지 않는 한, 기본법상 기본권 기준이 아니라, 연합법을 통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측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9. 이러한 배경에서 제출법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한편으로는 지침 제2조 a 및 제3조

제1항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침 제5조 제3항 c Fall 2 및 d가 완전한 합치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한다.

30. 이러한 한도에서 연합법 질서를 본질적으로 특징짓는 연합법 우선원칙에 따라 회원국에서의 연합법의 효력은, 이러한 국가가 헌법적 지위를 가진 국내법 조항을 주장하는 것을 통해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이 지적된다(2013년 2월 26일 판결, Melloni, C-399/11, EU:C:2013:107, 59 단락).
31. 회원국을 통한 지침의 이행은 헌장 제51조에 의해 고려되는 회원국을 통한 연합법의 시행 상황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이행의 경우 회원국의 이행에 있어서의 재량과 관계없이 헌장에 규정된 기본권 보호수준이 달성되어야 한다.
32. 그러나 회원국의 조치가 연합법에 의해 완전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규정 또는 조치가 헌장 제51조 제1항의 의미에서의 연합법을 시행하는 것인 경우, 국가당국과 법원은 이러한 적용을 통해 사법재판소에 의해 해석된 헌장의 보호수준이나 연합법의 우선권, 통일성 및 효과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에서 여전히 기본권에 대한 국내 보호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2013년 2월 26일 판결, Melloni, C-399/11, EU:C:2013:107, 60 단락 및 2013년 2월 26일 판결, Åkerberg Fransson, C-617/10, EU:C:2013:105, 29 단락).
33. 따라서 국내 법원과 당국이 이러한 국내법상 보고기준의 적용을, 이것이 지침 규정에 의해 효력을 발생하는 합치의 정보가 적용되는 한도에서 “국내법에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인정한다”는 제출법원에 의해 인용된 상황에 의거하는 것은 연합법에 일치한다. 왜냐하면 국내 보호기준의 적용이 규정이 완전히 합치되지 않은 경우에만 고려되기 때문이다.
34. 현재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지침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합치를 목표로 하며 또한 지침의 몇몇 규정들 외에도 연합법 입법자가 회원국에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vgl. 이러한 의미에서 2015년 3월 5일 판, Copydan Båndkopi, C-463/12, EU:C:2015:144, 57 단락 참조).

35. 우선 지침 제2조 a 및 제3조 제1항의 배타적 권리와 관련된 것은 제출된 판결 18 단락에서 설명된, 동 조항에 따라 회원국이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과 관련하여 어떤 형태 또는 방식으로든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 내지는 공중전달을 허용 또는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36. 따라서 동 조항에서는 저작권 보유자가 유럽연합에서 가지는 복제 및 공중전달을 위한 배타적 권리가 명확하게 확정된다. 또한 이러한 조항은 어떠한 조건과도 관련이 없으며, 그것의 시행 또는 효력발생을 위해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7. 사법재판소는 이 외에도 이러한 한도에서, 언급한 조항이 복제 및 공중전달에 관한 고도의 그리고 균일한 보호를 보장하는 합치적인 법적 범위를 제공한다고 이미 결정했다(2017년 2월 14일 소견서 3/15 [공공 저작물への 접근을 위한 마라케시 계약], EU:C:2017:114, 119 단락 및 거기서 인용된 판례; 공중전달권에 대해서는 2014년 2월 13일 판결, Svensson u. a., C-466/12, EU:C:2014:76, 41 단락, 2017년 3월 1일 판결, ITV Broadcasting u. a., C-275/15, EU:C:2017:144, 22 단락 및 거기서 인용된 판례 참조).
38. 따라서 지침 제2조 a 및 제3조 제1항은 이에 포함된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의 완전한 합치를 위한 조치이다(유럽연합 상표 소유자의 독점권에 대해서는 2001년 11월 20일 판결, Zino Davidoff und Levi Strauss, C-414/99 bis C-416/99, EU:C:2001:617, 39 단락 및 2002년 11월 12일 판결, Arsenal Football Club, C-206/01, EU:C:2002:651, 43 단락 참조).
39. 두 번째로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지침의 판단이유 32에 따라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복제 및 공중전달에 관한 배타적 권리에 관련된 예외와 제한이 명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40. 사법재판소의 판례로부터 이 한도에서 도출되는 것은, 회원국이 지침 제5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이행하는 경우 언급되는 특별한 예외 또는 제한의 재량범위는, 개별

사안에서 특히 해당 조항의 구문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의미에서 2010년 10월 21일 판결, Padawan, C-467/08, EU:C:2010:620, 36 단락, 2014년 9월 3일 판결, Deckmyn und Vrijheidsfonds, C-201/13, EU:C:2014:2132, 16 단락 및 2016년 9월 22일, Microsoft Mobile Sales International u. a., C-110/15, EU:C:2016:717, 27 단락; 2017년 2월 14일 소견서 3/15 [공공 저작물への 접근을 위한 마라케시 계약], EU:C:2017:114, 116 단락 참조). 이 경우 지침의 판단이유 31에 따라 연합법 입법자에 의해 의도된 예외 및 제한의 합치의 정도는 국내시장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1. 지침 제5조 제3항 c Fall 2 및 d에 따르면, 여기에 언급된 예외 또는 제한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당화되는 한도에서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의 이름을 포함한 출처가 제공되는 한도에서의 시사사건 보도와 관련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물의 이용” 및 “이것이 공공이 이미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대상물에 해당하는 한도에서, -이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의 이름을 포함한 출처가 주어진 한도에서 그리고 사용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며 특별한 목적에 의해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비평이나 리뷰와 같은 목적을 위한 인용”과 관련된다.
42. 동 조항의 내용에서 도출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를 통해 거기서 규정된 예외 또는 제한의 효력범위가 완전히 합치하는 것은 아니다.
43. 한편으로는, 즉 지침 제5조 제3항 c Fall 2 내지는 d의 “정보제공 목적으로 정당화되는 한도에서” 그리고 “사용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며 그 범위에 있어 특별한 목적을 통해 정당화되는 한도에서”라는 표현으로부터, 회원국이 이러한 조항을 이행하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이행을 위해 국내법 규정에 적용하는 경우, 이익형량을 가능하게 하는 광범위한 재량범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도출된다. 다른 한편, 동 지침 제5조 제3항 d는, 인용이 “비평이나 리뷰와 같은 목적으로 위해”라는 형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단지 예시적인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다.
44. 서술된 이행에 있어서의 재량범위는 지침의 제정을 위한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1997년 12월 10일의 정보화 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합치를 위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지침에 대한 제안에 있는 현재 지침 제5조 제3항 c 및 d에 중요하게 규정되어 있는 제한근거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이러한 제한이 제안에서의 제한적인 경제적 의미로 인하여 의도적으로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고 그 적용에 대한 최소요건만이 규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외 또는 제한의 적용에 대한 세부적인 요건을 동 조항의 기준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은 회원국의 책무이다.

45. 전술한 형량에도 불구하고 지침 제5조 제3항 c Fall 2 및 d를 이행하는 경우의 회원국의 재량범위는 다양한 관점에서 제한된다.
46. 첫째, 사법재판소는 지침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이행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회원국이 가지는 예외와 제한에 대한 재량범위는 연합법에 의한 한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재차 판결했다. 이는 회원국이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예외 또는 제한을 합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자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의미에서 2003년 2월 6일 판결, SENA, C-245/00, EU:C:2003:68, 34 단락, 2011년 12월 1일 판결, Painer, C-145/10, EU:C:2011:798, 104 단락 및 2014년 9월 3일 판결, Deckmyn und Vrijheidsfonds, C-201/13, EU:C:2014:2132, 16 단락; 소견서 3/15 [공공 저작물への 접근을 위한 마라케시 계약], EU:C:2017:114, 122 단락 참조).
47. 따라서 사법재판소는, 지침 제2조 및 제3조와 합치하는 규정과 관련한 예외 또는 제한을 도입하는 회원국의 가능성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율하는 연합법상 요건이 적용된다고 결정했다(이러한 의미에서 소견서 3/15 [공공 저작물への 접근을 위한 마라케시 계약], EU:C:2017:114, 126 단락 참조).
48. 특히 회원국은 지침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예외 또는 제한을, 동 조항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자신의 법률 조항에 규정할 수 있다(소견서 3/15 [공공 저작물への 접근을 위한 마라케시 계약], EU:C:2017:114, 123 단락 및 거기서 인용된 판례 참조).
49. 이 경우 회원국은 또한 비례원칙을 포함한 연합법의 일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조치는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적합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2011년 12월 1일 판결, Painer, C-145/10, EU:C:2011:798, 105 및 106 단락).

50. 둘째, 사법재판소는 회원국이 지침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이행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예외와 제한에 대한 재량범위를, 판단이유 1 내지 9에 따라 저작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와 국내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달성하는 데에 존재하는 지침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이러한 의미에서 2011년 12월 1일 판결, Painer, C-145/10, EU:C:2011:798, 107 단락, 2014년 4월 10일 판결, ACI Adam u. a., C-435/12, EU:C:2014:254, 34 단락, 소견서 3/15 [공공 저작물への 접근을 위한 마라케시 계약], EU:C:2017:114, 124 단락 및 거기서 인용된 판례 참조).
51.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이행을 하는 경우 동 지침의 판단이유 31상의 진술에 따라서, 권리인의 다양한 범주 사이의 그리고 권리인과 보호대상물의 이용자의 다양한 범주 사이의 적절한 권리 및 이익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 및 제한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하고 그 목적을 준수해야 한다(이러한 의미에서 2011년 10월 4일 판결, Football Association Premier League u. a., C-403/08 und C-429/08, EU:C:2011:631, 163 단락 및 2014년 9월 3일 판결, Deckmyn und Vrijheidsfonds, C-201/13, EU:C:2014:2132, 23 단락 참조).
52. 셋째, 지침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예외 및 제한을 이행하는 경우 회원국의 재량범위는 또한 지침 제5조 제5항에 의해 제한된다. 그러한 예외 또는 제한은 세 가지 요건에 종속되는데, 즉 오로지 특정된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저작물의 정상적인 효용을 침해하지 않고, 또한 권리인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소견서 3/15 [공공 저작물への 접근을 위한 마라케시 계약], EU:C:2017:114, 125 단락 및 거기서 인용된 판례).
53. 마지막으로 넷째, 제출된 판결 31 단락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회원국이 연합법을 이행하는 경우 현장에 명시된 회원국에 대한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회원국은 지침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예외 및 제한을 이행하는 경우 연합법의 범규정을 통해 보호되는 다양한 기본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보장하는, 이러한 조항의

해석을 뒷받침할 의무를 부담한다(2014년 3월 27일 판결, UPC Telekabel Wien, C-314/12, EU:C:2014:192, 46 단락, 2018년 10월 18일 판결, Bastei Lübbe, C-149/17, EU:C:2018:841, 45 단락 및 거기서 인용된 판례; 또한 2013년 9월 26일, IBV & Cie, C-195/12, EU:C:2013:598, 48 및 49 단락, 그리고 거기서 인용된 판례 참조).

54. 결국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침 제2조 a 및 제3조 제1항은 이에 포함된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의 완전한 합치를 위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침 제5조 제3항 c Fall 2 및 d는 이에 명시된 예외 또는 제한의 효력범위의 완전한 합치를 위한 조치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55. 두 번째로 심사되어야 하는 세 번째 질문으로 제출법원은 현장 제11조에 명시된 정보자유와 언론자유가 지침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예외 및 제한을 제외하고 동 지침 제2조 a 내지는 제3조 제1항의 복제 및 공중전달에 관한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자 했다.
56. 우선 제안근거 KOM(97)628 최종본 및 지침의 판단이유 32로부터 인용되는, 지침 제5조의 예외 및 제한이 빠짐없이 나열되어 있다는 것이 확정되어야 한다. 사법재판소는 또한 여러 차례 이를 확정했다(2016년 11월 16일 판결, Soulier und Doke, C-301/15, EU:C:2016:878, 34 단락 및 2018년 8월 7일 판결, Renckhoff, C-161/17, EU:C:2018:634, 16 단락).
57. 지침의 판단이유 3 및 31에서 도출되는 바와 같이, 지침에 의해 야기되는 합치는 특히 전자 미디어의 배경 하에 한편으로는 현장 제17조 제2항을 통해 보장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이해관계와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대상물 이용자의 이해관계 및 기본권의 보호, 특히 현장 제11조를 통해 보장되는 의사표현의 자유 및 정보자유 내지는 일반이해관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이러한 의미에서 2018년 8월 7일 판결, Renckhoff, C-161/17, EU:C:2018:634, 41 단락 참조).

58. 이러한 다양한 권리 및 이해관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지침 자체에 명시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2조 내지 제4조상의 권리인의 배타적 권리 및 제5조의 회원국에 의해 이행될 수 있거나 심지어 이행되어야 하는 이러한 권리의 예외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은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조치를 통해 그리고 국가 당국에 의한 이것의 적용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이러한 의미에서 2008년 1월 29일 판결, *Promusicae*, C-275/06, EU:C:2008:54, 66 단락 및 거기서 인용된 판례 참조).
59. 사법재판소는 현재 현장에 명시된 기본권, 그 유지를 사법재판소가 보장하는 기본권은 회원국에 공통된 전통적인 헌법과 그 회원국이 체결에 참여하거나 기여하는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 제공하는 지적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재차 판결했다(이러한 의미에서 2006년 6월 27일 판결, *Parlament/Rat*, C-540/03, EU:C:2006:429, 35 단락 및 거기서 인용된 판례 참조).
60. 지침 제5조 제3항 c Fall 2 및 d에 규정된 예외와 제한은 제출법원이 질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히 이것이 기본권으로 보호될 때 특히 중요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언론자유 보호대상물 이용자의 권리행사의 목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에 반대할 수 있는 저작자의 이익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동시에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제시되는 청구권을 용인해야 한다(이러한 의미에서 2011년 12월 1일 판결, *Painer*, C-145/10, EU:C:2011:798, 135 단락 참조).
61. 제출판결의 51 및 57 단락에 언급된 적절한 균형에 관하여 지침 제5조 제5항은 또한, 제출판결 52 단락에 진술된 바와 같이, 지침 제5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예외 및 제한을 특정된 특별한 경우, 즉 저작물의 정상적인 효용 또는 그 밖의 보호대상물을 침해하지 않고 권리인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데에 기여한다.
62. 모든 회원국이 제출된 판결 56 단락에 언급된 연합법 입법자의 명시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침 제5조에 빠짐없이 나열되어 있는 예외 및 제한 외에 지침 제2조 내지 제4조의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침을 통해 야기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합치의 효력 및 지침으로 추구되는 법적 안

정성에 대한 목표가 위태로워진다(2014년 2월 13일 판결, Svensson u. a., C-466/12, EU:C:2014:76, 34 및 35 단락). 즉 동 지침 판단이유 31로부터 명시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동의가 필요한 특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예외 및 제한의 경우에 존재하는 차이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영역에서 국내시장의 기능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따라서 지침 제5조에 나열된 예외 및 제한은 국내시장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63. 또한 회원국은 지침의 판단이유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예외 및 제한을 일관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 및 제한을 이행하는 경우 일관성의 필요성은, 이것이 회원국에게 지침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예외 이외에 이러한 예외 및 제한을 규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보장될 수 없다(이러한 의미에서 2015년 11월 12일 판결, Hewlett-Packard Belgium, C-572/13, EU:C:2015:750, 38 및 39 단락 참조). 사법재판소는 이 외에도, 지침의 어떤 조항도 회원국에게 이러한 제한 및 예외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이미 결정했다(이러한 의미에서 2014년 4월 10일 판결, ACI Adam u. a., C-435/12, EU:C:2014:254, 27 단락 참조).
64. 결국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헌장 제11조에 명시된 정보자유와 언론자유는 지침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예외 및 제한을 제외하고 동 지침 제2조 a 내지는 제3조 제1항의 복제 및 공중전달에 관한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두 번째 질문에 관하여

65. 두 번째 질문으로 제출법원이 알고자 했던 것은, 국내 법원이 한편으로는 지침 제2조 a 및 제3조 제1항으로부터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지침 제5조 제3항 c Fall 2 및 d의 예외조항으로부터의 보호대상물의 이용자의 권리 사이에서 선취하여야 하는 형량의 범위 내에서 선취해야 해야 하는 형량의 범위 내에서 헌장 제11조를 통해 보장되는 의사표현 및 정보자유를 보장할 필요성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해석을 뒷받침으로 하여 이러한 예외조항의 엄격한 해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이다.

66. 제출법원은 이 한도에서 제출된 사안에서 지침 제5조 제3항 c Fall 2가 풍케 미디어에 의한 의회보고의 이용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의회보고를 어떤 특별한 보도와 관련하여 공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67. 제출된 판결 53 단락에 진술된 바와 같이, 회원국은 지침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예외 및 제한을 이행하는 경우, 연합법 규정을 통해 보호되는 다양한 기본권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보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의 해석을 뒷받침할 의무를 부담한다.
68. 더 나아가 회원국의 당국과 법원은 이러한 지침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국내법을 이러한 지침에 따라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법 재판소가 재차 결정한 바와 같이 언급된 기본권이나 연합법의 다른 일반적인 기본원칙과 충돌하는 지침의 해석을 뒷받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이러한 의미에서 2008년 1월 29일 판결, Promusicae, C-275/06, EU:C:2008:54, 70 단락, 2014년 3월 27일 판결, UPC Telekabel Wien, C-314/12, EU:C:2014:192, 46 단락, 2015년 7월 16일 판결, Coty Germany, C-580/13, EU:C:2015:485, 34 단락 참조).
69. 즉 제출법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70. 그러나 지침 제5조가 형식상 “예외 및 제한”이라는 제목을 가지는 경우에도, 이러한 예외 또는 제한은 저작물이나 다른 보호대상물의 이용자에게 유리한 권리가 포함된다(이러한 의미에서 2014년 9월 11일 판결, Eugen Ulmer, C-117/13, EU:C:2014:2196, 43 단락 참조). 또한 제출된 판결 51 단락에 진술된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자신의 편에서는 광범위하게 해석되는 권리인의 권리 및 이해관계와 (이러한 의미에서 2016년 11월 16일 판결, Soulier und Doke, C-301/15, EU:C:2016:878, 30 및 31 단락, 그리고 거기서 인용된 판례 참조)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대상물의 이용자의 권리와 이해관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보장되어야 한다.

71. 결국 지침 제5조에 규정된 예외 및 제한의 해석은 제출된 판결 51 단락에서 결정된 바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하고 목표를 준수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필요성은, 예외 및 제한이 - 지침 제5조 제3항 c 및 d에 규정된 바와 같이 - 기본적 자유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72. 이와 관련하여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헌장 제1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항이나 사법재판소의 판례로부터 이러한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따라서 그 보호가 무조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2011년 11월 24일 판결, *Scarlet Extended*, C-70/10, EU:C:2011:771, 43 단락, 2012년 2월 16일 판결, *SABAM*, C-360/10, EU:C:2012:85, 41 단락, 그리고 2014년 3월 27일 판결, *UPC Telekabel Wien*, C-314/12, EU:C:2014:192, 61 단락).
73. 다른 한편 제출된 판결 60 단락에서 확정된 것은, 지침 제5조 제3항 c 및 d가 헌장 제11조를 통해 보장되는 보호대상물의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대한 권리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헌장 제52조 제3항으로, 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체결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을 통해 보장되는 권리에 상응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한, 헌장에 명시된 권리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을 통해 보장되는 이에 상응하는 권리 사이에 필요한 일관성이, 이를 통해서 연합법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생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016년 2월 15일 판결, *N.*, C-601/15 PPU, EU:C:2018년 9월 26일 판결, *Staatssecretaris van Veiligheid en justitie [Aufschiebende Wirkung des Rechtsmittels]*, C-180/17, EU:C:2018:775, 31 단락에서 인용된 판례 참조). 헌장 제11조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제10조 제1항을 통해 보장되는 권리에 상응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이러한 의미에서 2019년 2월 14일 판결, *Buivids*, C-345/17, EU:C:2019:122, 65 단락 및 거기서 인용된 판례 참조).
74.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저작권과 자유로운 의사표

현에 대한 권리 사이의 형량의 관점에서, 특히 정치적 논쟁이나 일반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토론의 범위에서 관련 “연설”이나 정보의 유형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된다(이러한 의미에서 유럽인권재판소 2013년 1월 10일, Ashby Donald u. a./Frankreich, CE:ECHR:2013:0110JUD003676908, § 39).

75. 제출된 사안에서 사법재판소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 도출되는 것은, 폰케 미디어가 단순히 의회보고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한 것뿐만 아니라 소개 텍스트, 추가 링크 및 쌍방향 참여를 위한 초대가 포함된 체계적인 형식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보고가 지침 제2조 a 및 제3조 제1항의 의미에서의 “저작물”로서 분류된다고 가정하면, 의회보고의 공개는 지침 제5조 제3항 c Fall 2의 의미에서의 “시사사건 보도와 관련한 ... 저작물의 이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공개는, 제출법원이 심사하여야 하는 그 밖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도에서, 동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
76. 최종적으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대답되어야 하는 것은, 국내 법원은 한편으로는 지침 제2조 a 및 제3조 제1항의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와 다른 한편으로는 지침 제5조 제3항 c Fall 2 및 d의 예외조항으로부터의 보호대상물 이용자의 권리 사이에 개별 사안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선취하여야 하는 형량의 범위에서, 문구에 유의하여 그리고 그것의 실질적인 효과를 유지하며, 현장을 통해 보장되는 기본권과 완전히 일치하는 이러한 조항의 해석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용

77. 원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 절차는 회부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서 분쟁 조정에 해당한다; 비용은 따라서 동 법원이 결정한다. 다른 참가인이 법원에 진술서를 요청할 때 발생한 비용은 상환될 수 없다.

이러한 근거로 사법재판소(대합의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정보화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합치를 위한 2001년 5월 2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지침 2001/29/EG 제2조 a 및 제3조 제1항은, 이에 포함된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의 완전한 합치를 위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침 제5조 제3항 c Fall 2 및 d는 이에 명시된 예외 또는 제한의 효력범위의 완전한 합치를 위한 조치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헌장 제11조에 명시된 정보자유와 언론자유는 지침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예외 및 제한을 제외하고 동 지침 제2조 a 내지는 제3조 제1항의 복제 및 공중전달에 관한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3. 국내 법원은 한편으로는 지침 제2조 a 및 제3조 제1항의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와 다른 한편으로는 지침 제5조 제3항 c Fall 2 및 d의 예외조항으로부터의 보호대상물 이용자의 권리 사이에 개별 사안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선취하여야 하는 형량의 범위에서, 문구에 유의하여 그리고 그것의 실질적인 효과를 유지하며, 헌장을 통해 보장되는 기본권과 완전히 일치하는 이러한 조항의 해석을 뒷받침해야 한다.

URL :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216545&pageIndex=0&doclang=de&mode=lst&dir=&occ=first&part=1&cid=10768869>